

<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>

개정 전	개정 후
<p>제17조의3(상시 거주 자연의 정당한 사유) 법 제36조의3제4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</p> <p>1.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자연되어 주택을 취득한 자가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</p> <p>2.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자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(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)</p> <p>3.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</p>	<p><삭 제></p>